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5일

나. 발 의 자: 김현진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9. 1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진 의원)

□ 제안이유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추가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3항)

나.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의 변경(안 제14조제3항)

다. 기타 자구 수정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다. 입법예고(2023. 8. 28. ~ 2023. 9. 1.)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에 대하여 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제③항은 기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학습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
- 안 제14조제③항은 규칙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위탁 근거를 변경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기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범위에 학습참여자의 대한 지원 보조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의지를 고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 강서평생학습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으로, 기존 규칙에서 조례로 위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은 타 민간위탁 사업과의 통일성 측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